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76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서삼석 · 朴芝源 · 조인철
송옥주 · 김성범 · 이개호
박용갑 · 문금주 · 조승래
맹성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의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제2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u> <u>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u> <u>4. 이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u>

